



# 여 성 가 족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참여 협조 요청

1. 관련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등
2.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매 2년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기관 및 단체에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24년 말까지 보수교육 대상자임  
※ '24년 보수교육 일정 등 확인 :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및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문의
4.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청소년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정책과장),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과장), 인천광역시(청소년정책과장),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과장), 울산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아동청소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충청북도지사(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경상남도지사(보육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아동보육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청년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교육청소년과장), 전라남도지사(희망인재육성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교육협력추진단장), 대전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장), 경기도지사(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장

주무관	이하나	사무관	이영민	청소년활동진 흥과장	전결 2024. 07. 19. 양철수
협조자					
시행	청소년활동진흥과-2109	(2024. 07. 19.)	접수	24097	(2024. 7. 22.)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세종로)			
전화번호	02-2100-6257	팩스번호	02-2100-6424	/ hana926@korea.kr	/ 공개